

의안번호	2217264
의 퇴 인	허성무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6.
추계번호	26A1317

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기본계획 수립 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조선산업협력 협의체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공공기관의 임직원, 조선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조선산업협력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9조(특화구역 지원)	○ 정부는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화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항만·물류·교통·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능 고도화 － 2. 특화구역 입주기업의 연구개발, 시험·인증, 기술이전 등 기술혁신 기반 구축 － 3. 산·학·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－ 4. 특화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금융지원 등의 우대	재량규정
4	안 제11조(전용단지 지원)	○ 정부는 전용단지의 조성·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전용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지조성 공사비 지원 － 2.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험설비 구축 지원 － 3. 전용단지 입주기업 대상 교육·훈련 및 전문인력 공급 지원 － 4.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공정 혁신, 친환경 기자재 도입 및 생산설비의 기능 고도화 지원 － 5. 전용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유치 촉진 및 금융지원 － 6. 생산·가공·조립 등 관련 기자재 공동 활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－ 7. 그 밖에 전용단지 조성·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5	안 제12조(조세의 감면 등)	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 특례제한법」, 「관세법」 및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, 소득세, 관세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4조(맞춤형 조선기업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을 위하여 조선기업의 조선산업 관련 제품·시설에 대한 해외 인증 지원, 해외 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5조(금융지원 등)	○ 정부는 조선기업이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, 「무역보험법」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,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·운용하게 할 수 있으며, 펀드를 조성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8	안 제16조(공동연구개발센터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산업 생산성 향상 및 미래형 선박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력하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9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조선산업 분야 우호 협력관계 증진 및 조선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생산 인력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(제1항) 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(제2항) － 1.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해외 파견 및 연수 － 2. 미국 연구기관 등과 공동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의 운영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3. 석·박사학위 연계 국제 공동 학위과정의 지원 - 4. 재직자 직무 전환 및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운영 - 5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
10	안 제18조(네트워크 구축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산·학·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개발, 공동 세미나·포럼 개최, 조선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, 표준화 협력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9조(해외시장 진출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선기업이 미국 조선소 법인의 지분 인수 또는 시설 확보 등을 통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2	안 제20조(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조선산업 관련 주요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3	안 제21조(국제조선산업 협의체)	○ 정부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선산업 협의체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14	안 제22조(조선산업협력기금의 설치)	○ 산업통상부장관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선산업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함(제1항) 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3항) - 1.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- 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- 3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(제4항) - 1.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 - 2. 정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- 3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- 4. 그 밖에 조선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조(기본계획 수립 등)	○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할 때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5년 단위) 수립으로 5년마다 5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산업통상부 등은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조선 함정MRO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, 한-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, 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,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7조(조선산업협력 협의체)	
3	안 제9조(특화구역 지원)	
4	안 제11조(전용단지 지원)	
5	안 제12조(조세의 감면 등)	
6	안 제14조(맞춤형 조선기업 지원)	
7	안 제15조(금융지원 등)	
8	안 제16조(공동연구개발 센터)	
9	안 제17조(전문인력의 양성)	
10	안 제18조(네트워크 구축)	
11	안 제19조(해외시장 진출 지원)	
12	안 제20조(산업기술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)	
13	안 제21조(국제조선산업 협의체)	
14	안 제22조(조선산업협력 기금의 설치)	

2. 상세 사유

가. 기본계획 수립 등(안 제6조)·조선산업협력협약체(안 제7조)

- 안 제6조의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5년 단위) 수립의 경우 유사 연구용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2027년에 5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유사 사례로는 “조선산업 시장분석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”(산업통상부, 2022년, 4,500만원), “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및 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용역”(울산광역시, 2017년, 5,580만원), “최근 조선불황 이후 세계(한중일 등) 구조 재편과 정책방향 및 향후 시황 전망”(산업통상부, 2013년, 5,000만원) 등이 있음

[표 1] 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조선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기본계획 수립 등 (안 제6조)	50	—	—	—	—	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다만, 안 제7조의 조선산업협력협약체의 경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조선산업협력협약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, 공공기관의 임직원, 조선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됨

나. 특화구역 지원(안 제9조)·전용단지 지원(안 제11조)·조세의 감면 등(안 제12조)

-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을 지정하고 특화구역 내 함정관리전용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또한,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화구역 및 전용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12조)
- 다만, 제정안은 권역별 조선산업 특화구역과 함정관리전용단지 지원사업의 범위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현재 산업통상부는 함정 유지·보수·정비와 관련하여 “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(인력양성, 기업지원)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[표 2] 한미 조선산업 협력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관련 사업	2026 예산	2027 계획
안 제11조 (전용단지 지원)	중소조선 함정MRO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(인력양성, 기업지원)	4,985	5,000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다. 공동연구개발센터(안 제16조)·전문인력의 양성(안 제17조)·네트워크 구축(안 제18조)·해외시장 진출 지원(안 제19조)
- 안 제16조, 안 제17조 등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립·운영하고,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·학·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, 조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제정안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재 산업통상부는 한미간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하여 “한-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”, “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”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
[표 3] 한미 조선산업 협력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제정안	관련 사업	2026 예산	2027 계획
안 제16조 (공동연구개발센터) 안 제17조 (전문인력의 양성) 안 제18조 (네트워크 구축)	한-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	6,644	6,644
안 제19조 (해외시장 진출 지원)	중소조선 및 기자재 미국진출 지원	7,663	7,663

자료: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라. 맞춤형 조선기업 지원(안 제14조)·금융지원 등(안 제15조)·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(안 제20조)·국제조선산업 협의체(안 제21조)·조선산업협력기금의 설치(안 제22조)

□ 안 제14조, 안 제15조, 안 제20조 등에 따라 정부가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조선산업 협의체를 두며,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선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산업기술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조선산업협력기금을 설치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선산업협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 등에 사용함
- 한미 조선산업 협력사업이란, 대한민국과 미국 간 체결된 조선산업 관련 조약·협약·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(안 제2조제3호)
 - － 가.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공동 연구개발사업
 - 나. 미래형 선박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공동 개발·실증 사업
 - 다.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, 기술 교육 및 교류 사업
 - 라. 조선기자재의 공동 생산 및 공급망 구축 사업
 - 마. 조선·해양 분야 표준화, 안전관리규정, 인증제도 관련 공동 협력 사업
 - 바. 선박 및 조선기자재 등의 수출입 투자 촉진 사업

사. 제8조에 따른 조선산업 특화구역 내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
아. 그 밖에 조선산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사업

- 다만, 제정안은 이러한 지원과 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
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간 협의내용에
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
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